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. 6. 9 선고 2016가합10222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
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의료법인 B

2. 주식회사 신한은행

변론 종결2017. 4. 14.

판결 선고2017. 6. 9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. 피고 의료법인 B은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9. 6. 29. 접수
제47501호로 마친,

나.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9. 6. 29. 접수
제47500호로 마친,

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4. 9. 25. 접수 제13175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고 의료법인 B(이하 '피고 법인'이라 한다)을 설립한 자이다.
나. 원고는 2009. 6. 29. 피고 법인에게 별지 목록 1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출연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475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,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출연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475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고,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(이하 '피고 은행'이라 한다)은 2014. 9. 25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1,640,000,000원, 채무자 피고 법인,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175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를 마쳤다.

[인정사실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4호증, 을 제12호증의 6, 7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토지의 등기원인은 2009. 6. 29.자 출연이다. 그러나 원고는 출연사유서 및 출연재산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, 피고 법인의 대표자인 D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위 서류들을 작성하였다.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마쳐져 무효이므로, 위 등기들은 말소되어야 한다.

나. 인정사실

- 1)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E병원은 안양시 만안구 C 토지 지상에 있는데, 그 주위로 안양시 만안구 F 토지, G 토지, H 토지, I 토지(이하 '인접 토지'라 한다)와 이 사건 토지가 있다.
 - 2) 원고는 2009. 6. 29. 피고 법인에게 인접 토지 및 H 지상 건물에 대한 출연사유서 5매,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연사유서와 출연재산계약서 각 2매를 작성하여 주었다.
 - 3) 원고는 2014. 8. 13. D, J가 원고 명의의 2009. 6. 29.자 출연사유서 7매, 출연재산계약서 2매,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, 검사는 2015. 5. 8.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.
 - 4) 피고 법인은 원고를 상대로 인접 토지 및 H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9. 6. 29.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위 사건의 항소심은 피고 법인의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으며, 그 판결은 2017. 5. 31. 확정되었다(수원지방법원 2014가합850, 서울고등법원 2015나30468, 대법원 2017다8005, 이하 '관련 민사사건'이라 한다).
 - 5)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출연사유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되었거나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, 항소심 법원은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.
-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호증의 1 내지 9, 을 제3호증의 5, 을 제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다. 판단

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로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(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1다72029 판결),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 및 절차도 적법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다.

원고는 출연사유서와 출연재산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,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것인바(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4다52768 판결,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다48964, 48971 판결 등 참조),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, 원고는

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같은 취지로 인접 토지에 대한 출연사유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, D이 서류를 위조하였거나 서류 작성 시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 바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 민사사건은 그 쟁점이 동일한 점, D이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정진원

판사신수빈

판사장서진

별지